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81

2016년 2월 25일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용석(도봉)의원 등 18명

나. 발 의 일 : 2015년 11월 11일

다. 회 부 일 : 2015년 11월 13일

라. 상 정 일 :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6년 2월 25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용석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○ 예비비는「지방자치법」제129조 및「지방재정법」제43조에 따라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며, 일반예비비와 재해·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음.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,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이와 같이 예비비의 편성취지가 당해 회계연도에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,

○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, 본예산의 부족 재원에 대해 예비비가 보조재원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.

○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·개선하고,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,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

○ 시장과 교육감은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함(안 제3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,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」 제10조,
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,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.

※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[1]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[2]

○ 동 개정안은 그 동안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왔던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의회가 집행부(서울시 및 교육청)의 예비비 집행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
---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○ 다만,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서 서울시(재무과, 예산담당관)는 별도 의견이 없다고 하였으나, 서울시교육청(예산담당관)은 “분기별” 이 아닌 “반기별” 보고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,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의 명확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최근 3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승인 건수 비교〉

구 분	2015년	2014년	2013년
서 울 시	46건	28건	20건
서울시교육청	36건	67건	106건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요건과 보고시기를 명확히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보고토록 수정함.(안 제3조제3항)

8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81

제안년월일 : 2016년 2월 25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요건과 보고시기의 명확히 함.

2. 주요내용

○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보고토록 수정함. (안 제3조제3항)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분기별로 예비비 지출 내역”을 “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예비비 지출 **승인**) ① (생략) ② (생략) <신 설>	제3조(예비비 지출 **보고 및 승인**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시장과 교육감은 **분기별로 예비비지출 내역을**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3조(예비비 지출 **보고 및 승인**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시장과 교육감은 **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**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예비비 지출 승인”을 “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예비비 지출 승인)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 설>	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**③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**